

의안번호	2205516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계번호	24D504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억 8,500만원(연간 5,7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 지정 (안 제12조제2항 신설)	57	57	57	57	57	285	57

주: 신규 인력 채용 등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¹⁾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2조의2(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플랫폼을 지정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계하여 별도로 활용할 수 있음(제1항)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제1호)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제2호)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제3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5호) · 그 밖에 플랫폼 연계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미첨부 사유
1	안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제2항 신설	○	-
2	안 제12조의2(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 신설	×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를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²⁾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화 서비스(답례품, 기금사업 발굴, 홍보 등)를 민간플랫폼에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약 10%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금 모금액이 다르고, 계약 내용에 따른 수수료가 상이하며, 민간업체와의 계약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비용을 추가재정소

1)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고향사랑 e음(lovegohyang.go.kr)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연계하여 민간 앱이나 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함

요로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고향사랑 기부금 연구센터 지정

-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이 설치·운영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간 사업비는 약 5,700만원임³⁾
 -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관」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시 설치되는 비상설 조직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시·도협력 포럼
 -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표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사업 비용 현황: 2023~2024년

구분		사업 비용(천원)	비고
합 계		114,228	
2023년	소 계	57,066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12,971	5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시·도협력 포럼	4,000	4회 운영(임차료 등)
	고향사랑의 날 기념	14,563	

3)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 개요

- (설치/구성) 한시조직으로 설치, 총 4명으로 운영(연구직 4인(지자체 파견인력 1인 별도))
- (관련 예산) 편성예산 없음(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동경비(연구역량 강화비) 사용 중)
- (관련 연구실적) 정책연구과제 1건('22. 5월), 수시연구과제 2건('23. 12월, '24. 6월)
- (주요 활동) 국회 토론회('24. 6월), 제도개선 포럼('24. 6. 27. 예정), 플랫폼 민간개방 TF('24. 5월)
-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총 12회), 시·도별 권역별 협력포럼('23년 총 5회)

2024년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시·도 정책과제	8,348	1건
	연구 보조원	17,184	약 8개월 채용
	소 계	57,162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5,562	2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5,473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활성화 포럼	18,427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컨설팅	3,667	4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시·도 정책과제	7,456	1건
	행정안전부 수시과제	3,208	1건
	연구 보조원	13,369	약 6개월 채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비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연간 사업비인 5,700만원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표 2]의 2023~2024년도 사업비의 변화가 미미하므로 추계 기간 동안 위탁 비용은 매년 5,700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일부추계)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억 8,500만원(연간 5,7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 지정 (안 제12조제2항 신설)	57	57	57	57	57	285

주: 신규 인력 채용 등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